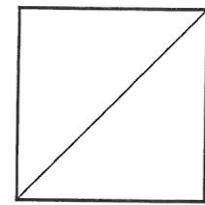


(붙임)

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18. 6. 7.

의
결
사
항

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일부개정(안)

한국신용정보원
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
회의안건

제 출 자	위 원 장
제출연월일	2018. 6. 7.

1. 의결 주문

-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일부개정(안)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 이유

- 소액연체정보 공유예외 등록금액 변경 및 재창업·재도전 기업인 정보 CB사 제공을 위하여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(이하 “규약”)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 내용

- 소액연체정보 공유예외 등록금액 변경(관련 조문 : § 15)

- (개정취지) 금융기관에 제공되지 않는 소액연체정보(50만원 이하)의 등록금액을 경제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상향 조정함으로써 금융 취약계층의 불이익을 완화^{*}하고자 함
 - *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(금융위, '18. 1. 30.)
- (개정내용) 현재 금융기관에 제공되지 않는 소액연체정보(50만원 이하)의 등록금액을 100만원 이하로 변경
- (시행일) '18. 12. 3.부터

- 재창업·재도전 기업인 정보(등록코드1601) CB사 제공(관련 조문 : <별표 1> 신용정보관리기준)

- (개정취지) 우리 원이 보유하고 있는 재창업·재도전 기업인에 대한 정보(등록코드: 1601)를 CB사에도 제공하여 이들에 대한 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재기를 지원^{*}하고자 함
 - * 「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(금융위, '17. 4. 20.)」 관련 후속 조치
- (개정내용) 현재 정보등록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, 신용회복 위원회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에만 제공하고 있는 재창업·재도전 기업인에 대한 정보를 CB사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
- (시행일) '18. 6. 7.부터

4. 참고사항

□ 관계조문 :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, 제26조제1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7조제1항

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
제25조의2(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)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
2. 공공 목적의 조사 및 분석 업무
3. 신용정보의 가공·분석 및 제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4.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의 통보대행 업무
5. 다른 법령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
6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
제26조(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)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안에 대한 심의
2. 신용정보의 집중관리·활용에 드는 경상경비, 신규사업의 투자비 등의 분담에 관한 사항
3.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제공의무 이행 실태에 관한 조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는 사항
4.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누설 또는 이용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신용정보의 집중관리·활용에 필요한 사항

◇ 신용정보업감독규정

제17조(신용조회회사등의 신용정보 등록·변경·관리) ①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는 영 제2조제1항의 신용정보별로 등록·변경·관리 기준을 마련한다.

(별지)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기 정 안		비 고	
제15조 【일반신용정보의 공유여부】 ① 금융기관은 연체정보 및 대외변제·매지급 정보(다만 제15조【일반신용정보의 공유여부】 ① 100만원 ~)를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다.	② ~ ⑧ (생략)	② ~ ⑧ (현행과 같음)		○ 소액연체정보 기준 변경	
<별표 1>	신용정보관리기준	신용정보관리기준			
5. 공공정보 1) 체납정보 등	5. 공공정보 1) 체납정보 등	구 분	등록사유	등록 코드	등록사유 코드
신용회복지원 23.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재무부 지원위원회(신용회복위원회)로부터 제충업자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 기금으로부터 체도전 기업주 채기 지원보증을 받은 자 - 차금지원을 받은 날을 등록 사유발생일로 한다.	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. 재창업자금 지원·제도전 체기지원보증의 취소 또는 실효 등 2. 공유 체한증인 정보가 해제된 경우	제 코드 1601 77	-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용 보증기금, 기술보증 기금이 등록 = 정보등록기한 제거 - 차금지원기한 제거 = 정보등록기한 및 신용 회복지원제공 제공기관 추가	(현행과 같음)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 (현행과 같음)
				부 처 <2018.6.7.>	이 규약은 2018. 6. 7.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2018. 12. 3.부터 시행 일 명시